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요약

## □ (목적)

- 교육생 및 교육기관의 다빈도 불편 사항 개선하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절차 교육으로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

## □ (교육 강화) ... 보건복지부 요청사항

- 대면교육기관의 교육생 대상 '노인학대예방' 추가(3월 중) 교육
  - (교육자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PDF파일)
    - ※ (자료협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교육일) 2025. 3월 중 시행 ... 보수교육 일정이 있는 기관
  - (방법·시간) : PDF 파일 활용하여 15분 내외 교육
    - ※ 대면 교육 총 이수시간 8시간 내 포함하여 교육
  - (기타) 3월부터 '노인학대예방'교육 관련 설문문항 포함하여 배포(QR) 예정
    - ※ 2025년 교육기관 시범평가에 '노인학대예방'교육 가산점 1.5점

## □ (주요 변경사항)

### ① 교육생 관련 보수교육면제 및 이수 조건 완화

- (면제\* 증빙자료 완화) <sup>(24)</sup>국시원 합격 확인서 → <sup>(25)</sup>국시원 합격 확인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취득 연도 확인)

\*면제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온라인교육 의무사항 완화)

- <sup>(24)</sup>①온라인교육 (선)수강, ②수강시작일부터 월말(30일이내)까지 이수,  
③60일 이내 대면교육 이수 → <sup>(25)</sup>3개 항목 모두 '권고' 적용  
⇒ (강조) 당해 연도 내 모든 과정 완료하여야 '이수'로 인정됨

### ② 교육기관 운영 개선

- (대면교육기관 운영 개선) <sup>(24)</sup>대면교육 필수영역(다·라 영역) 4시간 단독 운영 불가 → <sup>(25)</sup>단독 운영 가능
- (휴업신고) 교육기관 1년 기간 이내 휴업신고 가능(신설)  
※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업 신고서 등 제출(관할 운영센터)

###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관외 소재지 이전 기준(신설)

- (원칙) 관외(운영센터 기준)로 소재지 이전한 기관은 폐지신고 → 타 지역 지정신청 불가
-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관외로 소재지 이전한 경우, 기존 소재지 폐지 → 신규 소재지 지정신청(폐지 및 지정신청 절차 동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또는 위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소재지 이전 경우만 지정신청 인정(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잔여기간 적용)

### ④ 교육기관 신규 강사: 입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해당 월(말일)까지 강사 보수교육 이수

※ 당해 연도 내 동일 교육기관에 재 입사한 강사는 유예기간 적용 제외

### ⑤ 교육기관 평가: '자체 만족도 조사'에 따른 개선 여부 반영 예정('25년)

### ⑥ 보수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 2개 조항 추가

(추가) 6.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거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 유효기간 내 행정처분(지정취소) 받은 경우

(추가) 7.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 ⑥ 보존 서류 2종 추가: ①수업계획서, ②온라인 '수강확인증'(대면교육기관만 해당)

### ⑦ 인력 신고 및 이수 확인 관련 서식 개정: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신청서(서식 제1호)
-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서식 제8호), 보수교육비 수납대장(서식 제9호)
- 교육기관 출석부(서식 제10호), 보수교육 실시기관 변경신고서(서식 제13호)

#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다빈도 Q&A

< 질문요지 1 > 보수교육 개요 ... **교육생** **장기요양기관** **보수교육기관**

## <Q1. 보수교육 목적>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왜 실시하나요?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법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정('24.1.1.시행)

## <Q2. 보수교육과 직무교육 비교>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다른 교육인가요?

-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은 교육의 목적 및 교육 대상자가 다릅니다.

※ 직무교육: 재가기관(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대상

→ 직무 종사자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 보수교육: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대상

→ 자격 취득자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기술·기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

- 고시 제11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022년도까지 실시하였고, 2023년 직무교육이 종료되었습니다.

### <Q3. 보수교육 대상1>

- ☐ 장기요양기관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이 되나요?
- ☐ 가족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 대상인가요?
- ☐ 주야간보호기관,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 대상인가요?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입니다.

※ 장기요양기관이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 및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

- 따라서, 간호사 등 타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은 근무하는 직종에 대한 보수교육을 각 협회에서 이수

예시) 간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 간호사 보수교육(대한간호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사회복지사협회)

- 가족인 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기관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므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 <Q4. 보수교육 대상2>

- ☐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꼭 이수해야 하나요?

- 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입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p.6 '교육대상' 참고

#### <Q5. 보수교육 대상3>

- ☐ 방문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인데, 홀수연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교육대상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생년' 기준 짝·홀수연도에 교육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 제11조의5에 따라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매 2년에 1회 비용 산정이 가능하여, 짝수년도생이 홀수연도에 이수하여 비용 청구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홀수연도가 비용 청구 기준연도가 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의무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예시) 짝수 연도생 2025년에 이수한 경우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교육의무대상 연도 | ○     | ×     | ○     |
| 이수 연도     | ×     | ○     | ○     |
| 급여비용 청구연도 | ×     | ○     | ×     |

※ 방문요양 짝수년생 요양보호사가 '25년에 이수하여 청구 및 지급받은 경우  
→ '26년도 의무대상연도에 이수하더라도 비용지급 불가

※ 비용청구 및 근로시간 인정: 2년에 1회(고시 제11조의5, 고시 세부사항 제12조 참고)

#### <Q6. 보수교육 면제대상>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이 있나요?**
- ☐ **시범운영 시 보수교육 이수자도 보수교육을 또 이수하여야 하나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입니다. 보수교육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을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또한 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23.8~10월) 내 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Q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 여부>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요?
- ☐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정('24.1.1.시행)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법제화되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유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의무입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요양보호사 개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 <Q8. 교육비용 부담>

- ☐ 기존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무료로 받았는데, 보수교육은 왜 교육생이 돈을 내야하나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주 위탁 교육입니다. 전체 교육비용 36,110원 중 50%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50%는 사업주(장기요양기관장)가 부담하여 실시한 교육입니다.
- 반면, 보수교육은 국가자격증의 유지를 위해 직종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타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경우에도 교육비는 교육 대상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대면 8시간 기준, 36,000원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온라인+대면 30,000원).

### <Q9. 근무시간 인정 여부>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근무시간 인정이 되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제①항 제3호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합니다.

※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중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

### <Q10. 보수교육 필수영역 이수>

☐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받고 싶은데, 정해진 순서가 있나요?**

☐ **보수교육 필수4가지 영역을 다 받아야 하나요?**

- 온라인교육(가·나 영역) 수강 완료 후 대면교육(다·라 영역)을 수강하도록 권고합니다. 만약 온라인교육을 수강완료 하였더라도 대면교육을 수강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이므로 이수증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 교육생은 온라인교육 수료 후, 온라인보수교육기관에서 ‘온라인교육 수강 확인증’을 출력하여 대면교육을 받을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교육 수강완료 후 당해 연도 60일 이내 대면교육 이수(권고)

- 보수교육은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하며, 각 필수 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8시간 이상 이수하였더라도 4개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로 간주함.

- 모든 과정을 당해 연도 내에 이수하여야 ‘이수자’로 인정함

### <Q11. 교육방법 병행 및 분할교육>

- ☐ 온라인교육 4시간은 하루 동안 모두 수강해야 하나요?
- ☐ 대면교육 8시간을 2일 이상 분할하여 교육받을 수는 없나요?

- 온라인교육은 수강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하도록 권고합니다.
- 대면교육은 1일(8시간) 교육 이수가 원칙이나, 동일한 교육기관의 경우 2회까지 분할 이수 가능합니다.

## < 질문요지 2 > 보수교육 급여비용 ... 교육생 장기요양기관

### <Q12. 청구가능 여부1 >

- ☐ 방문형 기관의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받는 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못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이 있나요?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보수교육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세요.

- 고시 제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의 방법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2년에 1회 95,000원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고,
- 입소형 기관(주·야간보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의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달에 고시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므로 보수교육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대면 8시간: 95,000원, 대면 4시간: 47,500원

- 따라서, 교육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서 근무중이거나 방문형 기관에서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 경우 보수교육 급여비용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13. 청구가능 여부2 >

-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2025년 2월 10일 퇴사하고, 방문요양기관에 2월 11일 입사하여 2월 20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입니다. 보수교육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오. 보수교육 이수 월인 2025년 2월에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므로 2월달은 고시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므로 보수교육 급여비용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Q14. 청구가능 여부3 >

- ☐ 홀수년생 요양보호사가 2024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2025년도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오. 보수교육 급여비용은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에 한하여 95,000원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2024년에 지급받았다면, 2025년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교육이수    | ○     | ○     | ○     | ○     | ×     | ○     |
| 급여비용 산정 | ○     | ×     | ○     | ×     | ×     | ○     |

#### <Q15. 청구가능 여부4>

- ☐ A기관에 퇴사 후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B(방문요양)기관에 입사하여 보수교육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비용 청구 되나요?

- 아니요. 이수내역에 대한 비용청구는 요양보호사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연도별', '최초 이수내역(8시간)'으로 검증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요양보호사는 퇴사 후 이수하였기에 교육대상 및 비용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장기요양기관 포털>요양자원>보수교육 대상자 관리 화면에 이수자로는 인정됨(이수여부: "Y")

#### <Q16. 청구 방법 및 기간 >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보수교육 급여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수증을 장기요양기관(이수일 당시에 재직중인 기관이어야 함)에 제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형) 1개소에만 원본 제시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

-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수증 사본을 청구 관련 자료로 3년 보관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음

※ 급여비용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

**<Q17. 교육비 지불방법 >**

- ☐ 대면교육기관에 교육 신청은 했는데, 교육비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납부 하나요?
- ☐ 교육비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교육비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교육을 신청한 대면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시 3일 전까지 환불 신청하지 않은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불가피한 상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p.34 ‘교육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참고

**<방문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 신청 방법>**

- (대상) 교육 이수일 당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 근무: 지자체 인력신고 상 재직(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기준

- (산정기준)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산정  
\* 대면 8시간 : 95,000원 (대면 4시간 : 47,500원)

- (신청방법)

- 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

\*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형) 1개소에만 원본 제출

\* 부당·중복 청구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

- ②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 급여비용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

**■ 지급 예시**

| 5월                 | 6월                | 7월             | 8월 |
|--------------------|-------------------|----------------|----|
| (요양보호사)<br>보수교육 이수 | (교육기관)<br>이수결과 보고 | (장기요양기관)<br>청구 | 지급 |

**보수교육 이수한 달(5월)로부터 지급(8월)까지 최소 3개월**

- (청구기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 까지

※ 보수교육 결과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이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공단으로 보고하므로 급여비용 청구는 다다음달부터 가능

▶ 방문형(방문요양·목욕) 재가 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의 성격이므로, 보수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는 대상 제외